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498 |
|----------|-----|

2016.12.21.(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9일

-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진형)

가. 제안사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사무정비, 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 설 : 6건 (별표1)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

- (복지정책과)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 (1건)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등 (2건)
- (교통물류과)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1건)

< 사무정비 : 국가사무(규칙) → 시도사무(조례) >

- (식의약안전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등 (2건)

○ 그 밖의 개정사항 : 6건 (별표1)

< 위임사무 신설(마약류도매업자 허가)에 따른 기 위임사무 정비 >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무 (5건)

< 과 명칭 변경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산업과 >

- (문화예술산업과) 조직개편('16.9.30.)에 따른 과 명칭 변경 (1건)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의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1건), 식의약안전과의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등(2건), 교통물류과의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1건) 등을 시장·군수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식의약안전과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등(2건)의 사무를 국가사무(규칙)에서 시도사무(조례)로 사무정비하고, 식의약안전과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위임사무 신설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무 등(5건) 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산업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 498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6년 월 일 (제 352 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98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 : 6건 (별표1)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

- (복지정책과)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 (1건)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등 (2건)
- (교통물류과)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1건)

< 사무정비 : 국가사무(규칙) → 시도사무(조례) >

- (식의약안전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등 (2건)

- 그 밖의 개정사항 : 6건 (별표1)

< 위임사무 신설(마약류도매업자 허가)에 따른 기 위임사무 정비 >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무 (5건)

< 과 명칭 변경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산업과 >

- (문화예술산업과) 조직개편('16.9.30.)에 따른 과 명칭 변경 (1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10. 31, 2015. 3. 27, 2015. 5. 15, 2016. 1. 1, 2016.08.0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세정과 | 1 | · 도세 징수유예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 | 2 | · 도세 기한의 연장 | 같은 법 제26조 |
| | 3 | · 도세 결손처분 | 같은 법 제96조 |
| | 4 |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
| 회계과 | 1 |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
| | 2 |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 |
| 복지정책과 | 1 |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2 |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3 |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4 |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5 |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 6 | ·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
| | 7 | ·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
| 보건정책과 | 1 |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식 의 약 안 전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다.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마.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바.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아. 마약의 소매 보고 자. 행정처분 차. 청문 카.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타.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파.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교부 하. 몰수마약류의 폐기·처분 |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p> <p>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p> <p>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p> <p>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p> <p>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p> <p>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p> <p>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p> <p>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53조</p> |
| 경 제 정 책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p> <p>같은 법 제5조제1항</p> <p>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p>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p> <p>같은 법 제12조제7항</p> <p>같은 법 제13조제1항</p> <p>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17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p> <p>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경제정책과 | 2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 같은 법 제53조 |
| | 3 |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 |
| | |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
| | |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 같은 법 제39조제6항 |
| | |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
| | 4 |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조제1항 |
| | |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 5 | ·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78조제4항 |
| | |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 |
| | |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 | |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6조 |
| | |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6조 |
| | 6 |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7조 |
|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119조 | |
| 7 |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 |
| 7 |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 |
| |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 |
| | 다. 보고 및 조사 등 |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 |
| | 라. 개선명령 | 같은 법 제52조 | |
| |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 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 | |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76조 | |
| | 사.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 같은 법 제9조, 제12조 | |
| | 아.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 같은 법 제63조 | |
| | 자.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 같은 법 제6조 | |
| | 차.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 같은 법 제8조 | |
| 카.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정정요구 |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경 제 정 책 과 | 8 |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 |
| | 9 |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8조 |
| | 10 |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2008.1.17> 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같은 법 제28조 |
| 투 유 치 과 | 1 |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 밖에 KGB복합, 옥산, 오창제2, 오창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 2 | ·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 같은 법 제43조의3 |
| | 3 |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 | 4 |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 농 업 정 책 과 | 1 | ·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유 농 산 과 | 1 |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
| | 2 |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
| | 3 | ·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경지정리사업, 받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 미만) 개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
| | 4 |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
| | 5 |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
| | 6 | · 도유재산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 축 산 과 | 1 |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
| | 2 |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제18조 동물보호법 제19조 동물보호법 제20조 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법 제22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산림 녹지과 | 1 |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 산림보호법 제24조 |
| | 2 |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 같은 법 제13조 |
| | 3 |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 |
| | 4 |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
| | 5 |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
| | 6 | ·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문화예술 산업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p>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p>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p>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4항, 제20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p> <p>같은 법 제21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p> <p>같은 법 제24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7조</p> |
| 건축 문화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 <p>주택법 제24조</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 <p>주택법 제16조</p> |
| 균형 발전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 <p>같은 법 제30조, 제50조</p>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아. 공동구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 카. 전기공급설비 |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조</p>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균형 발전 전과 | | 타. 가스공급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열공급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더. 운동장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머. 도서관 버. 문화시설 서. 연구시설 어. 사회복지시설 저. 공공직업훈련시설 처. 청소년 수련시설 커. 유수지 터. 방화설비 퍼. 저수지(댐 제외)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하수도 모. 도축장 보. 장례식장 소. 종합의료시설 오. 폐차장 조.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하천(소하천에 한함) 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화장시설 누. 보안시설 두. 자연장지 루. 공동묘지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5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6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7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8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군 형 발 전 과 | 9 |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1조 |
| | 10 |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133조 |
| | 11 |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
| | |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 도시개발법 제9조 |
| | |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
| | |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 같은 법 제19조 |
| | |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같은 법 제20조 |
| | |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 같은 법 제26조 |
| | |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같은 법 제58조 |
| | |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 같은 법 제66조 |
| | |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 같은 법 제68조 |
| | 12 |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 같은 법 제13조 | |
| | 나. 선수금 승인 | 같은 법 제25조 | |
| | 다. 준공검사 | 같은 법 제50조 | |
| |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51조 | |
| |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 같은 법 제52조 | |
| |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 같은 법 제53조 | |
| 13 |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 |
|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 같은 법 제16조의2 | | |
|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 | |
|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도로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61조, 91조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40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40조제4항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106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라.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도로에 관한 조사 바.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69조, 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교통물류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자동차관리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p> <p>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p> <p>자동차관리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20조, 제21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p> <p>자동차등록령 제31조</p>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개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새김 명령등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차.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같은 법 제3조, 제5조</p> <p>같은 법 제6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1조</p> <p>같은 법 제8조의2</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p> <p>같은 법 제34조의2</p> <p>같은 법 제35조의2</p>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p>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 <p>같은 법 제83조</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p> |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p>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사용정지 | <p>같은 법 제89조</p> |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8조제4항</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0조</p>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무명 | 근거법령 |
|-------|------|---|---|
| 교통물류과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파. 면허의 취소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러.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p>·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p>9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제3항</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88조</p> <p>같은 법 제86조</p> <p>같은 법 제53조</p> <p>같은 법 제54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0조, 제57조</p> <p>같은 법 제47조제3항·제4항</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p> <p>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2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p> <p>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35조</p> <p>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p> <p>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86조</p> <p>같은 법 제88조</p> <p>같은 법 제94조</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p> |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의버스 제외) |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p>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치 수 방 재 과 | 1 |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 하천법 제5조 |
| | 2 |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 | 3 |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 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
| | 4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 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5 |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 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 같은 법 제29조 |
| | 6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 | |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 | |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0조제2항 |
| | |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 같은 법 제30조제10항 |
| |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30조제4항 | |
| | 마.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0조제5항 | |
| | 바. 인가내용 고시 | 같은 법 제30조제6항 | |
| 7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 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 |
| 8 |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 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 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2조 | |
| 9 |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 한 조치 | 하천법 제33조 | |
| | 가. 토지의 점용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 | 나. 하천시설의 점용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 |
| |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정에 의하 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 |
| |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치 수 방 재 과 | |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
| | |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
| | |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 | |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
| | |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
| | |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
| | |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
| | 10 |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 하천법 제33조제6항 |
| | 11 |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및 감사의뢰· 준공검사· 공사비예치 | 같은 법 제33조제8항 |
| | 12 |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13 |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14 |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 15 |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 같은 법 제90조 |
| | 16 |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69조 |
| | 17 |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70조 |
| | 18 |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 19 |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 하천법 제38조제1항 |
| | |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 |
| |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
| | | 다. 죽목의 식재 | |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치 수 방 재 과 | 20 |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 하천법 제38조제4항 |
| | 21 |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22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 | 23 |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조사·통지 | 같은 법 제76조 |
| | 24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 같은 법 제78조 |
| | 25 |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 같은 법 제72조 |
| | 26 |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 같은 법 제89조 |
| | 27 |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 시 청문 | 같은 법 제91조 |
| | 28 |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29 |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 | 30 | · 보상금액의 산정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
| | 31 | · 보상금 지급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32 |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33 | · 보상금의 공탁 | 같은 법 제8조 |
| | 34 |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 같은 법 제9조 |
| | 35 |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
| | 36 | · 도유재산 용도폐지 | 같은 법 제11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환경 정책과 | 1 |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
| | 2 |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같은 법 제17조 |
| | 3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
| | 4 |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
| | 5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
| | 6 | ·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 |
| | 7 |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 같은 법 제94조 |
| | 8 |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
| | 9 |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
| | 10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 같은 법 제68조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환경 정책과 | 11 |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12 |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 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13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
| | 14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

[별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총 무 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을 위임) · 별정직·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3항 관련)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대응예방과 | 1 |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 |
| | |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 |
| | | 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 | 같은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10조 |
| | | 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 | 같은법 제17조 |
| | |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 정지권 | 같은법 제12조 |
| | 2 | ·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 | | 나.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10조 |
| | 다. 등록취소 청문 | 같은법 제32조 | |
| | 3 | ·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 | 나.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10조 | |
| | 4 | ·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법 제31조 |
| | |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같은법 제32조 |
| | |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같은법 제34조 |
| | | 마.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35조 |
| | | 바. 등록취소 청문 | 같은법 제44조제2호 |
| 5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같은법 제16조제3항 | |
|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법 제16조제5항 | | |

[별표 4]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관련)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위임대상 기 관 | 근거법령 |
|-----|----------|---|-------------------|-------------------------------------|
| 총무과 | 1 |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 충북도립 대학총장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
| | 2 |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자치 연수원장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3 |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의 원내 전보권 · 5급 상당 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 보권 (연구소장은 제외) | 농업 기술원장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4 |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원내 전보권 | 보건환경 연구원장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5 |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의 당해 기관 내 전보권 | 당해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별표 5] <개정 2013. 12. 27>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7항 관련)

| 분야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 총무과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단, 개방형 직위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

관계법령 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점검·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식의약안전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① ~ ② 생략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명기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허가증의 교부) 제8종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도·소매 보고 등) ① 법 제27조, 법 제29조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물류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현황(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